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세 환급 현황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정책제안



목 차

1.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개요	1
2. 외국의 부가가치세 운용 현황	15
3. 부가가치세 세수관련 향후 5년간 예상 추계 현황 및 과거 5년간 품목별 부가가치세 수입 현황	25
4. (김성수의원의 정책 제안) 농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품목 확대	31
5. 참고 문헌	37
6.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41

요약문

-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은 기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 이외에 지원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 기자재 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후에 환급하여 주는 제도임.
- 현재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대상 품목은 2010년 세제개편시 추가된 '양송이 재배용 복토'를 포함하여 총 42종임.
- 현행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상 품목별로 규정되어 있음.
 - 이에 대해 현행 품목별 규정을 종류별로 포괄적으로 열거함으로써 환급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 검토의 요지임.
-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품목의 적용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요청을 받아 기획재정부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감면이 필요한 신규 기자재의 출현시마다 규정을 개정하여 적용하고 있음.
 - 따라서 종류별로 포괄적으로 열거하는 경우, 적용여부가 광범위함에 따라 매번 규정을 개정해야 하는 행정력 낭비를 저감할 수 있음.
 - 또한 종류별 열거시 이에 포함되는 기자재의 범위가 확대되는 효과로 농업인의 기자재 구입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조세지원 취지에 부합함.
- 그러나 종류별 열거시 범위확대 등에 따른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우려됨.
 - 농업용 기자재를 종류별로 열거시 그 해당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실제 영농에 사용되지 않는 품목이 포함될 소지와 더불어 이를 이용한 탈세 우려가 있음.
 - 또한 구체성이 감소하여 개별 품목의 적용여부가 불분명하며, 이 경우 결국 대상 여부를 다시 심사하여 규정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관계로 품목별 열거시와 동일한 행정력 낭비 우려가 발생함.

1

..... 농업용 기자재
..... 부가가치세 환급 개요

1.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개요

1) 개념

- WTO 체제가 시작되고, 우리나라가 OECD 가입을 전후하여 진행되어 온 농산물의 무역자유화 영향은 농업에 대한 국제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더 많은 정책적 지원이 요구되고 있음.
- 정부에서는 이러한 농촌 및 농업분야에 대하여 다양한 재정적 지원과 더불어 폭넓은 조세 측면의 지원을 시행하고 있음.
-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은 농업에 대한 조세지원의 일환으로 농업인의 기자재 구입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고효율의 기자재를 통한 농업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 농업용 기자재의 경우 상당부분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는 관계로 농업인이 기자재를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 부담이 전혀 없으나, 영세율을 적용받지 못하는 기자재 구입시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됨.
 -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은 기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 이외에 지원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 기자재 구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후에 환급하여 주는 제도임.¹⁾

2) 대상 품목 및 조세감면 실적

- 현재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대상 품목은 2010년 세제개편 시 추가된 '양송이 재배용 복토'를 포함하여 총 42종임²⁾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2)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 제1호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 제1호

1. 농업용 필름(비닐하우스용, 보온못자리용, 발작물피복용 또는 과수재배용에 한한다) 및 그 부속자재(비닐 고정용 패드 및 클립, 파이프조리개, 고정구 및 연결핀, 파이프꽃이에 한한다)
2. 농업용 파이프(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 비닐하우스와 과수재배용에 한한다)
3. 농업용 포장상자(종이재질의 농·축산물 포장용에 한한다)
4. 농업용 폴리프로필렌 포대(곡물 포장용에 한한다)
5. 과일봉지(과일의 병충해 방지 및 상품성 향상을 위해 열매에 씌우는 봉지에 한한다)
6. 인삼재배용 지주목·차광망·차광지 및 은박지
7. 차광망(연초건조용 또는 과수·화훼·채소재배용에 한한다)
8. 농업용 부직포(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에 한한다)
9. 농업용 배지(양액·버섯재배용만 해당한다) 및 양송이 재배용 복토
10. 축산업용 튜브(「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규정에 따른 사용기준을 충족한 것에 한한다)
11. 이앙기용 멀칭종이(논농사 피복용에 한한다)
12. 삭제 <2010.2.18>
13. 농업용 양수기
14. 범씨밭아기
15. 동력배토기
16. 동력에취기
17. 가축급여 조사료(家畜給與 粗飼料) 생산용 필름
18. 화훼용 종자류
19. 채소봉지(애호박오이용에 한한다)
20. 버섯재배용기
21. 축산업용 차량방역기
22. 폐사축처리기
23. 축사세척기
24. 카우브러쉬
25. 축산 약취제거기
26. 「약사법」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
27. 농작물 지주대
28. 농업용 무인헬리콥터
29. 농업용 로더(2톤 미만)
30. 농업용 굴삭기(1톤 미만)
31. 동력제초기
32. 농업용 고압세척기
33. 농산물 저온저장고(바닥면적이 17㎡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34. 농·축산용 환풍기(컨트롤러를 포함하며, 시설하우스용 또는 축사용인 것만 해당한다)
35. 축산용 인공수정 주입기
36. 축산용 인공수정 주입용기
37. 축산용 정액 희석제

- 38. 축산용 인큐베이터
- 39. 축산용 출하돈 선별기
- 40. 축사용 보온등 컨트롤러
- 41. 축사용 쿨링 패드
- 42. 축사용 워터컵
- 43. 축사용 바닥재[철재(鐵材) 바닥재만 해당한다]

□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특례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감면된 실적은 2009년 1,208억원이며, 2010년에는 2,076억원(잠정)으로 전년대비 약 72%가 증가하였고, 2011년에는 2,764억원으로 추정됨.

<표 1>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실적

(단위: 억원)

구 분	2009년	2010년(잠정)	2011년(잠정)
부가가치세	1,284	2,076	2,764

자료: 조세지출예산서(기획재정부, 2011)

3) 기타 농업용 기자재 관련 부가가치세 감면 규정

□ 농업·축산업·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 수혜자: 농업·축산업·임업 종사자

○ 수혜내용: 비료·농약·사료 등 농·축산·임업용 기자재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표 2> 농·축산·임업용 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실적

(단위: 억원)

구 분	2009년	2010년(잠정)	2011년(잠정)
부가가치세	13,924	15,481	16,457

자료: 조세지출예산서(기획재정부, 2011)

- 농·어민이 직수입하는 농·축산·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제9호
 - 수혜자: 농·어민
 - 수혜내용: 농·축산·어업용 기자재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제.

<표 3> 농·축산·어업용 기자재 부가세 면제 실적

(단위: 억원)

구 분	2009년	2010년(잠정)	2011년(잠정)
부가가치세	31	28	28

자료: 조세지출예산서(기획재정부, 2011)

-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면세유)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 제1호
 - 수혜자: 농민, 임업인, 어민
 - 수혜내용: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세, 교육세 면제.

<표 4> 농·임·어업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실적

(단위: 억원)

구 분	2009년	2010년(잠정)	2011년(잠정)
개별소비세	210	271	252
교통세	9,985	8,942	9,978
교육세	1,529	1,382	1,535
부가가치세	3,563	3,891	3,920
합 계	15,287	14,486	15,685

자료: 조세지출예산서(기획재정부, 2011)

4) 농업용 기자재 품목의 포괄적 분류 적용으로의 전환에 대한 검토

- 현행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상 품목별로 규정되어 있음.
 - 이에 대해 현행 품목별 규정을 종류별로 포괄적으로 열거함으로써 환급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 의뢰의 요지임.
- 현행 품목별 규정을 종류별로 포괄적으로 열거함에 따른 장·단점은 다음과 같음.
 -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품목의 적용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요청을 받아 기획재정부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감면이 필요한 신규 기자재의 출현시마다 규정을 개정하여 적용하고 있음.
 - 따라서 종류별로 포괄적으로 열거하는 경우, 적용여부가 광범위함에 따라 매년 규정을 개정해야 하는 행정력 낭비를 저감할 수 있음.
 - 또한 종류별 열거시 이에 포함되는 기자재의 범위가 확대되는 효과로 농업인의 기자재 구입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조세지원 취지에 부합함.
 - 그러나 종류별 열거시 범위확대 등에 따른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우려됨.
 - 농업용 기자재를 종류별로 열거시 그 해당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실제 영농에 사용되지 않는 품목이 포함될 소지와 더불어 이를 이용한 탈세 우려가 있음.
 - 또한 구체성이 감소하여 개별 품목의 적용여부가 불분명하며, 이 경우 결국 대상여부를 다시 심사하여 규정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관계로 품목별 열거시와 동일한 행정력 낭비 우려가 발생함.

- 농업용 기자재 규정을 종류별로 포괄적으로 열거함에 따른 추가적 세감면 효과에 대한 추계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업무범위에 해당하며, 구체적 법안작성시 법안비용추계 의뢰를 통하여 산출하는 것이 적합함.

<표 5>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연도별 세부내역
(단위: 억원)

사후환급적용자재	연간환급세액				
	2006	2007	2008	2009	2010
농업용 필름	201	211	238	237	250
농업용 파이프	144	149	185	209	196
농업용 포장상자	253	271	341	336	350
농업용 PP포대	11	9	13	16	15
과일봉지	47	36	38	42	41
인삼재배용 지주목 차광망	25	34	27	24	20
차광망(연초건조용, 과수, 화훼재배용)	2	2	2	5	4
농업용 부직포	20	27	36	53	51
농업용 배지	13	22	30	36	39
농업용 무인헬리콥터	-	-	-	2	1
축산자재	1	3	14	23	26
기타	10	38	33	146	21
합계	727	802	957	1,129	1,014

주: 2011.5.30.로 추가된 특례규정 별표5의 33. 농산물저온저장고 이하의 기자재는 포함되지 않은 자료임

자료: 농협중앙회(농업용기자재 부가세 사후환급 대행기관) 추산

-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액은 2006년 727억원에서 2010년 1,014 억원으로 증가하고 있음.

- 2010년 품목별 사후환급액 중에서 농업용 포장상자(350억원), 농업용 필름(250억원), 농업용 파이프(196억원)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2 | **외국의 부가가치세 운용 현황**

2. 외국의 부가가치세 운용 현황

□ OECD국가 중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가 모두 부가가치세를 실시하고 있음.

○ 현재 OECD국가의 부가가치세율은 5~25% 수준이며, 캐나다와 일본이 5%로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세율로 과세하고 있는 반면, 덴마크, 헝가리,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은 25% 및 25.5%의 표준세율을 부과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부가가치세율이 높다고 할 수 있음.

○ 단일세율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7개국 정도이며, 많은 나라들이 경감세율을 포함한 복수세율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표 6> OECD 회원국의 부가가치세율 현황

(단위: %)

국 가	도입연도	표준세율(2010)	경감세율(2010)
호주	2000	10	-
오스트리아	1973	20	10, 12
벨기에	1971	21	6, 12
캐나다	1991	5	-
체코	1993	20	10
덴마크	1967	25	-
핀란드	1994	23	9, 13
프랑스	1968	19.6	2.1, 5.5
독일	1968	19	7
그리스	1987	21	5, 10
헝가리	1988	25	5, 18
아이슬란드	1989	25.5	7
아일랜드	1972	21	4.8, 13.5
이탈리아	1973	20	4, 10
일본	1989	5	-
한국	1977	10	-
룩셈부르크	1970	15	3, 6, 12
멕시코	1980	15	-

네덜란드	1969	19	6
뉴질랜드	1986	12.5	-
노르웨이	1970	25	8, 14
폴란드	1993	22	3, 7
포르투갈	1986	20	5, 12
슬로바키아	1993	19	10
스페인	1986	18	4, 8
스웨덴	1969	25	6, 12
스위스	1995	7.6	2.4, 3.6
터키	1985	18	1, 8
영국	1973	17.5	5

자료: 한국조세연구원(주요국의 조세동향, 2010)

- 최근 세계적 금융위기에 따른 확장 재정정책의 결과로 국가채무가 급증하게 되자 유럽 여러 국가에서는 부가가치세를 인상을 추진하고 있음.
- 2009년 부가가치세 인상을 주도한 국가는 발트해 연안의 국가로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가 있음.
 - 발트해 연안의 국가에 이어 헝가리 체코, 아이슬란드 역시 부가가치세를 인상하였음.
 - 또한 최근에는 그리스, 아일랜드가 부가가치세를 인상하였으며, 핀란드, 스페인, 스위스 역시 인상계획을 확정하였음.

<표 7> 유럽국가의 부가가치세율 인상사례(표준세율)

(단위: %)

국 가	2008.1.1	2010.7.1	인상율
에스토니아	18	20	2
라트비아	18	21	3
리투아니아	18	21	3
아일랜드	21	21	2009: 0.5% 인상 2010: 0.5% 인하

스위스	7.6	8	0.4
아이슬란드	24.5	25.5	1
핀란드	22	23	1
그리스	19	21	2
스페인	16	18	2
헝가리	20	25	5
체코	19	20	1

자료: 한국조세연구원(주요국의 조세동향, 2010)

□ OECD에서는 ‘표준면세’라고 하여 부가가치세에서 공통적으로 면세되는 분야를 정해 놓았음.

- 우리나라 면세범위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면세범위가 상대적으로 적지 않음을 알 수 있음.
- 현실적으로 각 국가들은 표준면세 이외의 분야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면세하거나 또는 표준면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가 있는 등 다양하게 면세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또한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수출재화 및 용역에 대해서는 모든 OECD 국가가 영세율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표 8> 우리나라 면세범위와 OECD 표준면세범위 비교

OECD 표준면세범위	우편용역, 의료용역(환자이송용역, 혈액·장기·조직공급 포함), 자선사업, 교육, 비영리단체 비상업적인 활동, 스포츠 용역, 라디오 및 TV 방송을 제외한 문화산업, 보험 및 재보험, 부동산 임대, 금융용역, 복권 및 도박, 토지와 건물 공급, 특정 자금모집 용역
한국의 면세대상	미가공식료품, 수돗물, 연탄과 무연탄,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교육용역, 여객운송용역, 도서·우편 등, 담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 토지, 근로 유사 인적용역, 예술행사 및 비직업운동경기 등, 도서관 등의 입장, 종교단체 등의 공익목적 활동,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공공기관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재화 및 용역, 수입된 도서 및 학술연구단체 등의 교육용 재화 등

- 금융위기 이후 유럽의 주요국가에서는 재정위기를 극복하고자 부가가치세 과세기반 확대와 관련한 논의가 제기됨.
 - 영국에서는 국가경제의 회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재정결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정 계층에 대한 증세보다는 부가가치세 면세 및 영세율 폐지를 통한 세원확대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음.
 - OECD는 2010년 3월 '2010 독일 경제서베이'를 통하여 경제적 왜곡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세수증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에서 각종 혜택을 축소할 것을 독일에 권고함.
 - 실제 독일에서는 2010년 7월부터 우체국이 제공하는 우편서비스를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서 제외하였고, 그리스의 경우 2010년부터 전문가 그룹(변호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폐지함.

3

..... 부가가치세 세수관련
..... 향후 5년간
..... 예상 추계 현황 및
..... 과거 5년간 품목별
..... 부가가치세 수입 현황

3. 부가가치세 세수관련 향후 5년간 예상 추계 현황 및 과거 5년간 품목별 부가가치세 수입 현황.

□ 부가가치세 향후 세수추계

-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전망한 부가가치세 세수 전망은 다음과 같다.

<표 9> 2010~2014년 중 부가가치세 전망

(단위: 십억원, %)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연평균증가 율
부가가치세	49,771	53,124	55,918	61,142	66,766	(7.6)
(증가율)	(11.1) ¹⁾	(6.7)	(5.3)	(9.3)	(9.2)	

주: 1) 2009년 실적 47.0조원 중 2008년에서 2009년으로 납세유예된 2.2조원을 제외하고 계산한 증가율임. 2.2조원을 포함할 경우 증가율은 5.9%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10~2014년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 부가가치세 과거 세입실적

- 부가가치세 세입실적 중 품목별로 세분하여 통계 처리한 실적은 없으며, 국세통계연보에 나타난 과거 부가가치세 전체 세입실적은 다음과 같음.

<표 10> 2005~2009년 중 부가가치세 세입실적

(단위: 십억원, %)

구 분	합 계 (1+4+5)	국내분			수입분 (5)	점유비	
		납부 (2)	환급 (3)	실세수 (4=2-3)		국내분 (6=4/1)	수입분 (7=5/1)
2005년	36,119	35,571	23,060	12,511	23,608	34.6	65.4

2006년	38,093	38,149	26,335	11,814	26,279	31.0	69.0
2007년	40,942	41,290	29,000	12,290	28,652	30.0	70.0
2008년	43,820	43,617	38,377	5,240	38,580	12.0	88.0
2009년	46,992	48,013	35,385	12,628	34,364	26.9	73.1

자료: 국세통계연보(2010, 국세청)

□ 2006~2010년 농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액의 연평균증가율은 9.4%임.

<표 11> 2006~2010년 농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액 현황
(단위: 억원, %)

2006	2007	2008	2009	2010	평균증가율 (2006~2010)
727	802	957	1,129	1,014	9.4

자료: 농림수산물부 제출자료

- 2006~2010년 평균증가율을 적용하여 향후 5년의 농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추계함.

<표 12> 2011~2015년 농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액 추계
(단위: 억원)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부가가치세 환급액 ¹⁾	1,109	1,214	1,328	1,452	1,589

주: 1) 2006~2010년 평균 증가율을 적용했으며 매년 동일하다고 가정함.

4

..... (김성수의원의 정책 제안)
..... 농기자재 부가가치세
..... 환급 대상품목 확대

4. (김성수의원의 정책 제안)

농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품목 확대

현 황

- 농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은 '02년 1월부터 5개 품목으로 시행하여 '11. 1월말 현재 32개 품목으로 환급대상이 확대 됨.
 - '11. 1월 1개 품목(양송이 재배용 복토) 추가

□ 농업인 영농비 경감 수혜금액

(단위 : 억원)

연 도	'05	'06	'07	'08	'09	'10
환급액	662	727	800	1,019	1,116	1,155

문 제 점

□ 농업인 영농비 부담 경감 필요

- FTA 등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폭을 완화하고 국내 농업의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농업인의 영농비 부담 경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

□ 생산업종별 형평성 있는 조세체계 필요

- 생산 및 유통되는 품목에 따라 농업인 간 불평등한 세금 부담.
 - 계란 유통에 필요한 난좌는 면세품인데 반해, 과일유통에 이용되는 과일포장용 난좌는 과세품으로 환급대상에서 제외.

정책추진방향

□ 농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품목 확대를 위한 규정 개정

-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3장 제7조)" 에 아래 품목 추가 반영.

【건의대상 품목 및 세금 감면액 추정】

(단위 : 억원)

품 목	시장규모	경감액	비 고
농산물 운반용 플라스틱 상자	200	18	
농산물 포장용 스티로폼 상자	150	14	
농산물 포장용 PE 그물망	60	6	
과일 포장용 난좌	450	41	
계	860	79	

5



참고 문헌

<참고 문헌>

- 국세청, 「2010 국세통계연보」, 2010.12.
- 국회예산정책처, 「20110~2014년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2010.11.
- 김승래 외,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 정책과제의 경제적 분석」, 『분석보고서』, 조세연구원, 2007.12.
- 조세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 세법연구센터, 2010.05. 기획재정부 (www.mosf.go.kr)

6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첨부자료>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시행 2011. 3.21] [기획재정부령 제191호, 2011. 3.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29>

제2조(농민의 범위)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4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시설작물재배업종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콩나물재배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3.30]

제3조(월별판매액합계표 등의 서식) ①영 제4조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월별판매액합계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4조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임업용기자재구매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③영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납품확인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④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기록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4조 삭제 <2007.3.29>

제5조(환급대행자) 영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7.3.29, 2008.4.24, 2009.3.30>

1.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가 개인(「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한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조합등"이라 한다)

가.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가 조합등에 조합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조합원으로 등록된 조합등

나. 가목외의 경우에는 환급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지 또는 거주지 관할 조합등

2.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가 제1호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조합등

제6조(환급대행신청서 등의 서식) ①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대행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9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③영 제9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④영 제9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환급신청명세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⑤영 제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환급관리대장은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제7조(농·임·어업용 면세유류의 범위) ①영 제15조제1항제1호 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1의 면세유류 구입카드등 교부대상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4.24, 2011.3.21>

②영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농업기계, 임업기계"라 함은 별표 2 및 별표 3의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 교부대상 농업기계 및 임업기계를 말한다. <개정 2002.12.31, 2008.4.24, 2011.3.21>

[제목개정 2002.12.31]

제7조의2 삭제 <2008.4.24>

제8조(석유판매업자의 환급신청서 등) ① 영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자의 면세유류 감면세액 환급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5조의2제5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감면세액 환급내역을 말하며, 그 통보서식은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2008.4.24]

제9조(면세유류구입카드 등) ① 영 제16조제1호에 따른 면세유류구입카드는 직불카드의 교부를 원칙으로 하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면세석유류의 원활한 공급 및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신용카드업자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교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세유류구입카드 교부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4.24]

제10조(사용실적신고서의 서식)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사용실적신고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08.4.24]

제11조(면세유류판매업자 지정요건) ① 영 제20조의2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 그 밖의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농·어민등에게 공급한 석유제품별 물량이 면세유류구입카드 매출전표 또는 영수증

에 구분 표시되어 농·어민등에게 교부되도록 영 제16조제1호에 따른 면세유류구입 카드를 인식할 수 있는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을 것

2. 영 제1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② 영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면세유류판매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면세유류판매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석유판매업자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면세유류구입카드 인식 단말기 설치 확인서

③ 영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면세유류 판매업자 지정증은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08.4.24]

부칙 <제191호, 2011. 3.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 제65호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세유류 구입카드 등 교부대상 농업기계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43호 및 제4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유 면세유 제외에 관한 적용례) 기획재정부령 제65호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같은 규정 시행일 이후 최초로 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라 그 보유현황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경유 면세유 제외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기획재정부령 제65호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 시행일 전에 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라 그 보유현황을 신고한 농업용 난방기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령 제65호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MEMO
